

#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640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  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## 1. 폐지이유

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('22. 7월)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「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(※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2022. 8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폐지안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